

## 2013 년도 건의사항 답신에 관해

2014 年 4 月 15 日  
서울재판클럽(SJC)

### 답신 일람표(괄호 안은 작년 답신상황)

분야	항목수	기 수용	수용가능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답신곤란
노동	4(4)	0(0)	0(0)	1(0)	3(4)	0(0)	0(0)
세무	8(5)	2(0)	0(0)	0(0)	0(2)	6(3)	0(0)
금융	8(2)	0(0)	0(1)	1(0)	2(0)	5(2)	0(0)
지적재산권	23(22)	2(0)	1(11)	8(4)	8(12)	4(2)	1(0)
개별요망사항	8(6)	1(0)	0(2)	5(1)	0(1)	2(5)	0(0)
생활환경개선	0(1)	0(0)	0(0)	0(1)	0(0)	0(0)	0(0)
합계	51(41)	5(0)	1(14)	15(6)	13(19)	17(12)	1(0)

#### 노동분야 (신규 1 항목, 계속 3 항목)

- 1)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일부수용】
-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 【장기검토】
- 3)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 【장기검토】
-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장기검토】

#### 세무분야 (신규 4 항목, 계속 4 항목)

- 5) 외국인투자자의 배당금 감면세제 개선 【수용곤란】
-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 개선 요구 【기 수용】
- 7)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에 관한 과세 당국의 승인절차 신설 【수용곤란】
- 8) 영세율 적용대상인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 【수용곤란】
- 9)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취급 【수용곤란】
- 10)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취급 【수용곤란】
- 11) 외국소재 모회사의 자산총액 산정 시 적용환산율 【기 수용】
- 12) 한일조세조약의 조직개편에 따른 주식양도 차익의 비과세 【수용곤란】

#### 금융분야 (신규 6 항목, 계속 2 항목)

- 13) 외화대출 관련 증빙의 간소화 【일부수용】
- 14) 설비자금 관련 자기자본 지불에서 외화대출 실행까지의 기간 【수용곤란】
- 15) 국내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의 용인 【수용곤란】
- 16) 중개무역거래 시 수령·지불은행일치제도의 재검토 【장기검토】
- 17)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해외송금 보고시스템의 개선 【장기검토】
- 18) 내국신용장(로컬 L/C)의 결제조건 관련 규정의 재검토 【수용곤란】
- 19)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 등 외화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의 완화 【수용곤란】
- 20)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적용 【수용곤란】

**지적재산권분야 (신규 9 항목, 계속 14 항목)**

- 21) 특허법에 따른 수출 보호 【장기검토】
- 22)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부분적 효력범위의 적정화 【답신곤란】
- 23)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등재 심사기준의 적정화 【일부수용】
- 24) 직무발명제도 개정의 재검토 【수용곤란】
- 25) 침해소송에 따른 입증책임 균형의 적정화 【일부수용】
- 26) 침해소송에 따른 소송체계의 정비 【수용가능】
- 27) 퇴직심판관 및 법관의 관련사건 관여 금지 【장기검토, 일부수용】
- 28)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의 재검토 【장기검토】
- 29)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 【일부수용】
- 30) 특허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일부수용, 수용곤란】
- 31)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장기검토】
- 32)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기 수용】
- 33)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 장기화 【장기검토】
- 34)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의 가산 【수용곤란】
- 35) 디자인 무심사(일부 심사) 등록 물품의 재검토 【일부수용】
- 36) 상표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적용 판단시기의 개선 【기 수용】
- 37)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확대 【일부수용】
- 38)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완화 【수용곤란】
- 39)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 유효·무효 판단 【장기검토】
- 40) 예견성 있는 안정적 권리의 부여 【장기검토】
- 41)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장기검토】
- 42)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적정화 【수용곤란, 일부수용】
- 43)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철폐 【장기검토】

**개별요망사항 (신규 7 항목, 계속 1 항목)**

- 44) 안전 및 환경배려와 기업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 【일부수용】
- 45) 조달처(구매처)에 대한 서면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외 【수용곤란】
- 46)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면제 【기 수용】
- 47) K마크, ECO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수용곤란】
- 48) 신약평가 시 평가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일부수용】
- 49) 임상자료가 불충분한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일부수용】
- 50) 약가협상지침 제 11 조 1 항 6 호의 재검토에 관하여 (보험 등재된 국가가 3 개국 이하인 경우,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 이하로 정한 부분 삭제 요망) 【일부수용】
- 5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전자신청 사이트를 통한 신청처리 기한의 개선 【일부수용】

\*밑줄친 부분은 신규항목임.

## 서울재팬클럽 건의사항 검토의견

과제번호 1-1	(건의내용)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취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대응해온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이강연 사무관 044-202-7545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그간의 노사 신뢰 원칙을 강조 ○ 과거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이제는 전합 판결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통해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및 장시간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고용부 지방관서별로 구성된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제공 등 노사의 자율적 통상임금 정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
추 진 계 획	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전합 판결을 기본으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상임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과제번호 1-2</p>	<p>(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있는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또는 일본 노동계약법처럼 해당 변경이 합리적인 것일 경우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 예외조항 추가 도입</li> <li>○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 철폐,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li> </ul>
<p>관련부처 담당자</p>	<p>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강검윤 사무관 044-202-7544</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장기검토</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및 변경이 합리적인 경우 유효하도록 예외조항 도입</li> <li>○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이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뢰보호 및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부합하고,</li> <li>-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상 동 규정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음</li> </ul> </li> <li>○ 따라서 건의 내용과 같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 규정을 철폐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li> <li>○ 다만, 현재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임</li> </ul> </li> </ul> <p>*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근로기준과-1118, ‘09.4.24)</p> <p>** 대법원 2001.1.5., 99다70846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 철폐,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li> <li>○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이 변경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자의적인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li> </ul> </li> <li>○ 따라서, 사업주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과제번호 1-3</p>	<p>(건의내용)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p>
<p>관련부처 담당자</p>	<p>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노경님 사무관 044-202-7546</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장기검토</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근로자 측면의 금전보상 유인 뿐 아니라 휴가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 과소 인력 운영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연차휴가 소진률이 아직까지 매우 낮은 실정('12년 57.8%)</li> <li>○ 연차휴가 소진률 제고를 위해 금전보상 유인을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나,</li> <li>○ 40%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요구 및 대법원의 축적된 판례*에 의해 산업현장에 관행으로 굳어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계의 반발 및 노사갈등 초래 우려</li> <li>* 근로기준법령에는 명시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도 그 성질이 임금으로써 지급하도록 판결(대법원 1991.6.28., 90다카14758 등)</li> <li>○ 따라서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활용을 점차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통한 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미사용 연차휴가의 금전보상 관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연차휴가 소진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li> <li>*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통상 1년)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사용 스케줄을 제출받는 조치를 취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03년 개정, 사업주 임의 도입 가능)</li> </ul> </li> <li>○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시책 및 홍보 활동 실시 건의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장시간근로 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일가양득 캠페인)을 통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집중휴가제, 인식개선)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li> </ul> </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일가양득” 캠페인 및 장시간근로 개선 홍보 지속 전개(연중) <input type="checkbox"/> 연차유급휴가 사용률 제고 등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 및 홍보 실시 <input type="checkbox"/> 연차휴가 100% 소진, 집단휴가·연속휴가 등 권장,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 활성화, 연차휴가 활용 모범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배포
	추진완료예정일	'14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일가양득” 캠페인 및 장시간근로 개선 홍보 지속 전개(연중) <input type="checkbox"/> 연차휴가촉진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하반기)

<p>과제번호 1-4</p>	<p>(건의내용)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p>
<p>관련부처 담당자</p>	<p>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윤 사무관 044-202-7574 강승헌 사무관 044-202-7575</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장기검토</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기간 연장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p> <p>*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13.12월, 고용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중 2년 이상 무기계약 간주자 포함시 정규직 전환율은 47.2%로 나타남</p> <p>*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합헌결정 내린바 있음(‘13.10.24.)</p> <p>○ ‘09년 사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음</p> <p>* (노동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장된 기간(4년)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심화</p> <p>* (경영계)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활용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상용형파견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파견을 고착화시키거나 기존의 정규직근로자를 오히려 파견근로자화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상당함</p> <p>- 따라서 상용형파견 도입은 향후 노동시장 상황과 노사 및 관계 전문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p> <p>* ‘11년 당정은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야당 및 노동계의 강한 반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됨</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과제번호 2-1</p>	<p>(건의내용)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감면세제 개선</p> <p><input type="checkbox"/> '13.2.15. 조특령 개정에 따라 비감면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법인세율(22%)를 적용한 배당세액과 전체소득(감면·비감면 불문)에 제한세율(5%, 15%)를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p> <p>○ 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여 소급과세 등의 문제 발생</p> <p>○ 따라서 동 규정의 부칙이 현금주의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이월이익잉여금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필요</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p>
<p>검토 의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동 개정사항은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개정 후 배당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p> <p>○ 또한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곤란</p> <p><input type="checkbox"/> 참고로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제도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위해 '13년 세법개정시 폐지되었음을 감안할 필요</p>
<p>추진 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과제번호 2-2</p>	<p>(건의내용)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경정된 경우, ○ 어떤 가격조정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령에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기 수용</p>
	<p>검토내용</p> <p>□ 「국조법」 제10조의 2 ①항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대상으로</p> <p>○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된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p> <p>*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p> <p>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1&gt;</p> <p>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2.31, 2013.8.13&gt;</p> <p>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t;신설 2011.12.31&gt;</p> <p>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2.31&gt;</p> <p>○ 이는 세관장의 모든 경정처분을 경정청구 대상으로 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p>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과제번호 2-3</p>	<p>(건의내용) 과소자본 세제적용시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에 관한 과세당국의 승인절차 신설</p> <p><input type="checkbox"/> 과소자본세제* 관련 통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차입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서류 제출시 과세당국의 승인절차 규정 등 제정 필요</p> <p>○ 현재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었을 경우 승인기한, 효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금융업의 경우는 6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4)</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p>						
<p>검 토 의 견</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42 887 408 999"> <p>검토결과</p> </td> <td data-bbox="408 887 1422 999"> <p>수용곤란</p> </td> </tr> <tr> <td data-bbox="242 999 408 1308"> <p>검토내용</p> </td> <td data-bbox="408 999 1422 1308">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후 후속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p> <p>○ 최근 3년간 납세자의 자료제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p> </td> </tr> </table>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후 후속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p> <p>○ 최근 3년간 납세자의 자료제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후 후속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p> <p>○ 최근 3년간 납세자의 자료제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p>						
<p>추 진 계 획</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42 1308 408 1456"> <p>세부추진 계획</p> </td> <td data-bbox="408 1308 1422 1456">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td> </tr> <tr> <td data-bbox="242 1456 408 1590"> <p>추진완료 예정일</p> </td> <td data-bbox="408 1456 1422 1590">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td> </tr> <tr> <td data-bbox="242 1590 408 1720"> <p>추진일정</p> </td> <td data-bbox="408 1590 1422 1720">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td> </tr> </table>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과제번호 2-4</p>	<p>(건의내용) 영세율 적용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 확대</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찬웅 주무관 044-215-4241</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는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취지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2001.12.31. 세법개정시 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영세율 대상 범위를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며,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국외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2001.12.31. 열거주의로 변경한 기타 외화 획득 용역을 다시 포괄주의로 변경시 국내에서 소비 가능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불합리 발생 </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과제번호 2-5	(건의내용)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취급에 관하여 (조세조약상 항구적 시설 (PE)과 사업장 범위 일치)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찬웅 주무관 044-215-4241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상 항구적시설(고정사업장)은 소득을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지의 문제이므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조약에 따를 필요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판매행위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조세조약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당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과제번호 2-6	(건의내용)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재화의 수입시 영세율 적용 또는 수입부가가치세 징수 유예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찬웅 주무관 044-215-424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재화 수입에 대한 영세율 적용)</p> <p><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적용할 여지 없음</p> <p>(재화 수입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징수 유예)</p> <p><input type="checkbox"/>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유예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와의 과세불형평 초래</p> <p>*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원자재도 부가가치세 유예가 가능한 수입으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효과 발생 우려</p> <p><input type="checkbox"/> 재화 구입시점에서 원재료로 공급될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세관청과 불필요한 마찰 발생</p> <p>○ 수출용으로 수입신고된 원재료가 실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이 발생</p> <p>○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 발생 가능성</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과제번호 2-7</p>	<p>(건의사항) 외투기업의 모회사 자산총액 산정시 적용환율 개선 필요</p>	
<p>관련부처 담당자</p>	<p>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종길 주무관 042-481-8913</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p>	<p>기 수용</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증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중 적은 금액을 적용(중기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li> </ul> <p><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서울재팬클럽'의 제도개선 요청을 감안하여,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중</li> <li>○ 회사설립 등기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을 참고할 때 수용 곤란함</li> </ul> <p>*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화폐성외화자산을 원화로 산정할 때 회계기간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p> <p>-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법령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13년 건의사항과도 배치됨</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13.12월~)</p> <p>*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 적용</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14년 상반기</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과제번호 2-8</p>	<p>(건의내용) 한일 조세조약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양도 유사 소득 과세 관련</p> <p><input type="checkbox"/> 한-일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일본)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경우, 일방체약국(일본)의 거주자가 과점주주이면 타방체약국(한국, 원천지국)에 과세권 발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13조[1999.11.22]</p> <p>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u>최소한 25퍼센트</u>인 경우</p> <p>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u>최소한 5퍼센트</u>인 경우</p> <p>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6. 제12조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p> </div> <p><input type="checkbox"/> 이와 관련하여, SJC는 일본 조직개편세제를 충족시킨 사업개편에 따른 주식양도의 경우, 한국에서 교환공문 등을 통해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게 해 주길 요청</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수용곤란</p> <p>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규정한 우리 조세조약 체결례*상 특정 사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어,</p> <p>* 한-프랑스, 캐나다, 파키스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멕시코, 독일, 미얀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칠레, 태국, 파나마 등 17개국</p> <p><input type="checkbox"/> 특정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p>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p>

과제번호 3-1		(건의내용) 외화대출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허수진 사무관 044-215-475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화대출 용도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대출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불가피 <input type="checkbox"/>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양한 거래 현실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징구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가 있다면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대출 관련 사례집을 발간·배포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4.3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외화대출 사례집 발간·배포 ('14.3월)

과제번호 3-2		(건의내용) 자기자금으로 선지불한 외화대출의 인정기간(3개월) 확대, 외화대출후 일정 기간동안 국내 예치후 송금 허용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허수진 사무관 044-215-4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자기자금으로 선집행한 자금의 경우, 일정시점(3개월) 이내에 집행한 자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화대출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외화대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곤란 <input type="checkbox"/> 한편, 현재도 외화대출후 1개월까지는 국내 예치후 해외 송금이 가능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3-3		(건의내용) 국내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 허용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허수진 사무관 044-215-475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불필요한 외화수요 증가에 따른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완화하는 것은 곤란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외화차입은 금융불안시 디레버리징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가져오는 등 자본유출입 변동을 확대 <input type="checkbox"/> 국내 기업 입장에서라도 원화용도 외화대출시 환위험 노출 확대로 원화가치 급락(절하)시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 <input type="checkbox"/> 다만, 기업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사용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별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허용중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3-4</p>	<p>(건의내용) 실정과 맞지 않는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제도의 재검토 요청(중계무역 시 수입대금 지불은행과 수출대금 수령은행의 일치)</p>	
<p>관련부처 담당자</p>	<p>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정승진 사무관 044-203-4025</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장기검토</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중계무역에 대한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제도는 수출입실적 인정 등을 통해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p> <p>○ 수출입실적 증명을 위해서는 수출입실적 증명발급기관인 외국환은행이 수출금액 및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나,</p> <p>○ 중계무역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산업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한 것</p> <p>*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p> <p><input type="checkbox"/>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제도의 필요성, 무역 거래 형태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 개선 여부 검토</p> <p>○ 중계무역의 경우 편법 수출입실적 인정(가득액이 아닌 전체 수출액) 방지, 무환수출의 경우 국부유출 방지 필요</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추진('14년 상반기)</p> <p>○ 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p> <p>* 기재부, 관세청, 은행연합회 등</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14년 상반기)</p>

과제번호 3-5		(건의내용)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해외송금 보고시스템의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정선영 과장 02-759-580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수입대금의 해외송금시 상세한 정보 입력을 위해 은행이 규정상 제출이 면제되어 있는 수입승인서를 요청하는 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의 보고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 <input type="checkbox"/> 해외송금업무 처리시 은행들이 수입승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신고번호, HS 코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 등을 위해 동 정보가 필요하다는 관세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지난 '11.2월중 관세청이 동 보고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외환전산망 시스템에 게재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한국은행은 서울재팬클럽(SJC)에서 건의한 내용을 소관부서인 관세청에 전달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3-6		(건의내용) 내국신용장(로컬 L/C)의 결제 조건 관련 규정의 재검토
관련부처 담당자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오석은 과장(02-759-4495)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내국신용장 결제 조건을 거래 당사자가 연지급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회수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input type="checkbox"/>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 결제는 물품 구매업체의 파산시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이 상거래 안전을 위해 물품대금을 무조건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대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국신용장의 결제 조건은 일람출급식으로 단순.정형화되어 있어야 함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3-7		(건의내용)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화 자금조달 관련 규제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허수진 사무관 044-215-4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줄이고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質과 量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 과거 위기시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해왔던 외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input type="checkbox"/> 한편, 상대적으로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설계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旣반영하고 있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3-8	(건의내용)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과다한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과소자본세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 *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자본금보다는 차입금을 증가시켜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제도 도입 취지를 볼 때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특별히 차별하여 적용할 이유 없음 ○ 또한 차입금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3배(금융업 6배)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1		(건의내용) 특허법에 따른 수출 보호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과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
검토 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로 봄 <input type="checkbox"/>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 행위 중지 가능 <input type="checkbox"/> 또한, 수출의 전제 행위인 생산·사용·양도 행위는 특허권 침해 행위이므로 특허법에 따라 사전 예방 가능 <input type="checkbox"/>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행위 제제는 가능하나,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출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2		(건의내용)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부분적 효력범위의 적정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 042-481-5578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답변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부분적 효력범위의 적정화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허가받은 화합물이 특허청구범위 화합물에 속하는지(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90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의한 연장등록 출원 시 유효성분은 허가받은 형태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특허법 제95조(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의 해석 및 판단은 특허법원(사법부) 재판관의 고유권한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함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4-3</p>	<p>(건의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등재 심사기준의 적정화</p>
<p>관련부처 담당자</p>	<p>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박현정 사무관 043-719-282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부분수용(한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주장임)</p>
	<p>검토내용</p> <p>&lt;요청 사항&gt; 특허클레임과 상이한 내용의 등재클레임을 등재함으로 인해, 1. 특허권리범위 전체가 등재되지 않을 가능성 2. 특허권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식약처가 등재클레임을 기초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우려 4. 손해배상 여부가 등재클레임을 기초로 판단될 가능성 → 특허클레임 그대로 특허목록에 등재해 줄 것을 요청</p> <p>&lt;검토 결과&gt; 등재 심사는 신청된 특허가 해당 의약품과 관련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별도 심사 없이 등재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과 무관한 특허들이 무분별하게 등재될 우려가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심사없이 신청한 그대로 특허를 등재하여 해당 의약품과 관련없는 특허가 등재되는 등 문제 발생</p> <p>1. 등재클레임으로 한정되지 않은 특허청구항도 특허목록에 등재되고 있음 2. 제네릭사 등은 특허청구항을 기초로 특허권자에게의 통지의무 유무를 판단하며, 특허청구항과 관련 있는 제네릭이라면 허가 신청 사실 등이 특허권자에게 통지될 것임 3. 식약처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은 특허청구항임 4.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허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특허청구항을 기초로 판단</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과제번호 4-4</p>	<p>(건의내용) 직무발명제도 개정의 재검토</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여덕호 사무관 042-481-8180</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한*하는 것임  * 개정전 발명진흥법은 제도 미도입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나, 개정법은 제도 미도입 중견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한  <input type="checkbox"/> 개정발명진흥법은 자금, 조직, 인력 측면에서 유리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개정  <input type="checkbox"/> 동규정(발명진흥법 제10조1항 단서)을 포함한 개정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13)하였으며  - 참석 기업은 통상실시권 제한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또한, 개정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상호호혜적인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 및 R&amp;D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의 R&amp;D 활동이나 각종 인증 획득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특허청, 무역위원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은 우수 R&amp;D 성과 확보 및 경영 개선 등에 유리한 제도로 판단됨 </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14년)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변리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 제공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www.employeeinvention.net </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14년 11월</p>
	<p>추진일정</p>	<p>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공고('14년 1/4분기)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14년 4월~11월) </p>

<p>과제번호 4-5</p>	<p>(건의내용) 침해소송에 따른 입증책임 균형의 적정화</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사무관 042-481-3310</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부분수용</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침해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장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대원칙인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함</li> <li>○ 다만,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특성상 침해입증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2와 같이 침해자로 하여금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를 도입할 것인지는 입증부담원칙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판단 필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침해행위 입증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입증을 위한 서류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 추진 검토</li> </ul> </li> </ul> <p>* 지재권 전문가(학계, 법조계, 변리사계, 산업계 등)로 구성된 손해배상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위원회 논의('14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li> </ul> </li> </ul>
	<p>추진완료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li> </ul>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위원회 운영('14년 상반기)</li> </ul>

<p>과제번호 4-6</p>	<p>(건의내용) 침해소송에 따른 소송체계의 정비</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강운석 사무관 042-481-5187</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수용 (관계부처 협의 필요)</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소송으로 법원·소송대리인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크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특허침해소송의 일반법원 관할, 특허·기술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 부족 등 분쟁해결제도가 다소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소송 관할제도) 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 58개 지법·지원, 2심은 23개 고법·지법 항소부에서 관할</li> <li>* (특허소송 대리권)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 가능</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신속·정확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하고 소송대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소송 관할집중)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li> <li>*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li> </ul> </li> </ul> </li> </ul>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법무부·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14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재위 의결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허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논의</li> </ul> </li> </ul>
	<p>추진완료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5년(예정)</li> </ul>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일본의 특허소송 관할집중·부기변리사 제도 실태 조사를 위해 도쿄·오사카 지법, 도쿄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방문 예정('14년 4월)</li> </ul>

과제번호 4-7	(건의내용) 퇴직심판관 및 법관의 관련사건 관여 금지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강운석 사무관 042-481-5187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관계부처 협의 필요)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현재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심판관은 관련사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결취소소송에 관여한 법관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제한은 법무부·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장기검토 필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한편, 동일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 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판관 퇴직 후 대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리사윤리강령 제16조에 따라 변리사는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하였던 사건에 대해 대리 불가</li> <li>* 변리사윤리강령 제16조: 변리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li> <li>○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퇴직심판관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허사건에 대해 취급 불가</li> <li>*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li> </ul> </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동일사건의 범주에 대한 법적 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이 동일사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분석 등을 통해 검토</li> </ul> </li> </ul>
	추진완료 예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심판관 : '14. 6월</li> <li><input type="checkbox"/> 법관 : 법무부·법원 등 관계기관 검토 필요</li> </ul>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동일사건에 대해 판례분석 등 검토('14. 상반기)</li> </ul>



과제번호 4-7		(건의내용) 퇴직 법관의 관련사건 관여 금지
관련부처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채희만 02-2110-3630
검토의견	검토결과	기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113조 제4호) <input type="checkbox"/>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임시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퇴직 법관이 관련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함 ※ 퇴직 심판관의 경우 별도검토 필요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8	(건의내용)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특허권을 추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 도입 검토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양재석 서기관 042-481-5736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p>□ 현재 특허청에서도 통상실시권에 대한 당연대항제도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임</p> <table border="1" data-bbox="434 698 1414 869"> <thead> <tr> <th data-bbox="434 698 922 734">현행 특허법(제118조)</th> <th data-bbox="925 698 1414 734">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4 739 922 869">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td> <td data-bbox="925 739 1414 869">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특허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효력을 가짐</td> </tr> </tbody> </table> <p>□ 다만, 동 제안사항은 민법상 일반원칙*과 상반되는 것으로 거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함</p> <p>* (민법상 일반 원칙) 거래 안정성을 위해 등록 등을 통한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만 대항력 부여</p> <p>** 통상실시권 발생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특허권을 취득한 자의 보호 미흡</p> <p>○ 의견수렴을 통해 등록을 통한 공시가 있어야만 대항력을 부여토록 하는 거래안정성 측면과 통상실시권자 보호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p>	현행 특허법(제118조)	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
현행 특허법(제118조)	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	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특허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효력을 가짐			
추진계획	<p>□ (‘14년 상반기) 통상실시권의 당연대항제도 도입 필요성 의견수렴</p> <p>*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p>			
	추진완료 예정일	□ 미정		
	추진일정	□ 미정		

<p>과제번호 4-9</p>	<p>(건의내용)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기업교육 등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의식 조성 요망</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042-481-5761</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부분수용</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국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에는 벌칙규정상 보호대상을 기업에서 대인 등 영업비밀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가능토록 개정함(13.7)</li> <li>○ 손해배상액 적정화를 위한 방안도 특허법을 우선으로 검토 중임.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한국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개별기업방문, 컨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영업비밀 보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영업비밀 보호 관련 인식제고 활동('14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 정기교육, 기업방문교육 등</li> </ul> </li> </ul>
	<p>추진완료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li> </ul>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수시</li> </ul>

과제번호 4-10	(건의내용)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물품으로서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기 입법화 해 주기 바람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박상현 사무관 042-481-826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법상 보호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국, 일본등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아님</li> <li>○ 미국, 일본등은 특정의 발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으로서 보호되고 있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에서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록매체 청구항 형식으로만 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보호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특허보호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요건'을 만족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은 특허청구범위로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도 기재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li> </ul> </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검토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4년 하반기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검토 ('14년 상반기)

<p>과제번호 4-10</p>	<p>(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상의 유통·판매 등이 일반화된 요즘 침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도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li> </ul> </li> <li>○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물품으로서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li> </ul>
<p>관련부처 담당자</p>	<p>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서기관 044-203-2476</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수용곤란</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특허를 세계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특허청구범위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으로서만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으며,</li> <li>○ EU에서 ‘컴퓨터구현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지침’이 부결된 예에서 보듯이 SW특허를 대세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li> <li>* 일본은 2002년 10월 특허법 개정시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일부 기업이 SW특허를 독점하고 모호한 심사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빈번하자 최근 SW특허 남용과 관련한 권리남용 준칙 제정을 검토 중에 있음</li> </ul> </li> <li>□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IPS 협정문 제10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SW는 현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므로 특허로서의 확대 불필요</li> <li>-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li> </ul> </li> <li>□ 저작권법과의 혼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외에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국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특허와는 입법 목적이 상이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물인 SW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이용활성화를 통한 진보적인 SW 창출 등이 곤란할 수 있으며, 보호 목적 및 법익이 다른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중첩보호로 시장의 혼란 가능성이 매우 큼</li> <li>□ 콘텐츠 산업 발전의 저해 우려</li> <li>○ 특허 취득시 고비용 및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인해 일반인과 중소기업의 특허권리 취득이 어려워 대기업에 특허가 집중될 우려</li> </ul>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없음
	추진일정	□ 해당없음

과제번호 4-11		(건의내용)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복수의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인용관계가 복잡하여 제3자, 심사관 및 법원 등이 발명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매우 큼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심사관의 업무부담, 제3자 이해의 용이성,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다중종속항은 PCT, 미국, 중국 등에서도 금지하고 있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12		(건의내용)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재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5년 상반기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14년 2분기 입법예고 <input type="checkbox"/> '14년 하반기 국회제출



과제번호 4-13	(건의내용)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불복신청 등의 기본 기간 장기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과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 장기화 및 지정기간 자동 연장제도는 <input type="checkbox"/>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문제 및 권리 불확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제3자의 감시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14		(건의내용)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 가산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 042-481-5578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에 있어 연장기간 산정시 외국 임상시험기간 인정여부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 제도는 국내에서 특허권의 실시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년의 한도 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로, 특허법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임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임상시험기간은 국내 의약품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임 <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의 임상시험은 해당국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시험이 아니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p>*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4-15</p>	<p>(건의내용) 디자인 무심사(일부심사) 등록물품의 재검토</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이승윤 사무관 042-481-820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부분수용</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일부심사 대상물품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분쟁가능성이 적은 제품, 업계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p> <p>○ 개별물품의 특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일부심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디자인 등록제도 도입시 일부심사 대상물품은 로카르노 분류 기준 대분류(Class)로만 가능함</p> <p>※ 로카르노 분류 : 총32개 분류, 7000여개 물품수</p> <p>○ '14. 7. 1.부터 국제디자인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로카르노 분류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제2, 5, 19류만 일부심사 대상이 되므로 지적한 한국분류 H5-450(컴퓨터용 데이터 출력기), F5-210(상품진열용구)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변경됨</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지적한 물품류는 '14년 7월 1일부터 심사물품으로 전환</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과제번호 4-16</p>	<p>(건의내용) 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적용 판단시기의 개선</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손호진 사무관 042-481-5267</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수용</p>
	<p>검토내용</p>	<p>□ 상표부등록사유 해당성의 판단시점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상표부등록사유를 공익적 거절사유와 사익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사익적 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법 제7조제2항)</li> <li>○ (개선방향)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안 제34조제2항)</li> </ul>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법 전부개정안에 반영</li> <li>* 동 조항은 현재 법제처 심사 대기중</li> </ul>
	<p>추진완료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국회 통과(‘14년 10월 예정)</li> </ul>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국회 제출(‘14년 8월)</li> <li>○ 개정안 시행(‘15년 7월 예정)</li> </ul>

<p>과제번호 4-17</p>	<p>(건의내용) 상표의 지정상품 포괄적 기재 확대</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허원석 사무관 042-481-5299</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 부분수용</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국특허청은 거래사회의 실정을 반영하여 상품의 포괄적 기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에는 56개의 새로운 포괄명칭*을 인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회의시스템, 반찬,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업 등</li> </ul> </li> <li>○ 유사범위의 명확성, 수수료 가산제도와 의 형평성*, 출원인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확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명칭은 2개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데, 20개가 넘는 상품 1개당 2,000원씩 수수료가 가산되는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u>본체상품 및 그 부속품</u>”과 같은 상품명칭 기재방식은 <u>원칙적으로 불허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체상품과 그 부속품은 별개의 상품이며, 유사군코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임</li> <li>○ <u>예외적으로</u> 본체상품 및 그 부속품이 함께 거래되고, 모두 1개의 유사군코드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 및 그 부품, 의료용 보청기 및 그 부품 등</li> </ul> </li> </ul> </li> </ul>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에서 “본체상품 및 그 부속품”과 같은 상품명칭 기재방식 논의</li> <li><input type="checkbox"/> 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엘리베이터 및 그 부품”과 같은 인정가능한 포괄명칭 추가</li> </ul>
	<p>추진완료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li> </ul>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14년 3월)</li> <li><input type="checkbox"/> 고시개정('14년 하반기)</li> </ul>

과제번호 4-18		(건의내용)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심판정책과 배진효 사무관 042-481-842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권도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임 <input type="checkbox"/> 현재 제도하에서도,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는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자 또는 제3자를 통한 무효심판 청구가 남발되어 특허권자의 방어비용이 증가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19		(건의내용)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 유효·무효 판단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심판정책과 배진효 사무관 042-481-842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상기 건의사항은 침해소송 1,2심 법원의 관할 집중 및 침해소송 법원의 전문성 확보 등 선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20		(건의내용) 예견성 있는 안정적 권리의 부여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심판정책과 배진호 사무관 042-481-842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심사 . 심판간의 특허성 판단기준 조화를 위하여 년 2회 '심사/제도/품질/심판 합동회의' 운영중임 <input type="checkbox"/> 법원과의 특허성 판단 기준 통일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법원과의 간담회, 법원근무 복귀자의 법원근무결과 발표회를 통하여 법원과의 정보교류 중</li> <li>○ 최근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심판부에 제공 중</li> <li>○ 쟁점별 주요 심결에 대한 심판원 내 발표회를 통해 특허성 판단기준 통일화 추진 중</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21		(건의내용)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과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간접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및 특허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측면, 특허권자와 제3자의 형평성 측면, 국제적 조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과제번호 4-22		(건의내용)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적정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사무관 042-481-3310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및 일부 기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수용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의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일본에도 도입되지 아니한 제도인바, 수용곤란</li> </ul> <input type="checkbox"/>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 직권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이미 우리 법에 도입되어 있음</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23		(건의내용) 지상파 방송에서 일본 예능프로나 드라마 등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철폐
관련부처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황소현 사무관 044-203-259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일본 문화콘텐츠 개방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으로 복합적 층위를 가진 이슈임. 1998년 한일 정상외교장관공동선언문에 기반하여 개방조치가 이루어진 이래 한국은 총 4차에 걸쳐 일본 문화콘텐츠 개방 폭을 확대하였음 <input type="checkbox"/> 향후 일본 문화콘텐츠 추가 개방 여부는 산업적 영향, 국민 정서, 역사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임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과제번호 5-1</p>	<p>(건의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u>&lt;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gt;</u></p> <p>1. 등록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면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계승하는 조치(EU, 일본 수준의 규제수량 범위까지 변경 검토)</li> <li>* 상기 대응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대폭 간소화하고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이는 간이등록제도를 신설</li> <li>* 중소기업에도 본 법령의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을 요망. 특히, 중소기업에는 보고 및 등록을 수행하는 전문부서나 인재가 없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지원체제를 구축</li> </ul> <p>2. 등록면제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유해법의 개발 및 연구용 등록면제 규정의 부활 조치</li> <li>*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하한치 규정 및 명시</li> <li>* 유해성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폴리머를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시킨다.</li> <li>* 제8조 ②항의 3 및 4의 2호를 등록면제 대상으로 한다(상기처럼 현행 유해법의 개발 및 연구용 등록면제 규정의 부활 조치)</li> </ul> <p>3. 제조 등의 보고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비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보고제도의 구축</li> <li>* 보고의무자를 1차제조자, 1차수입자로 한정한다 (정확한 유통량 파악이 가능)</li> <li>* 수량 하한치를 명시하여 그 이하의 미미한 수량은 보고 면제</li> </ul> <p>4. 상기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p> <p>정의(제2조),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14조),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자료제출 방법(제14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제16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22조), 유해성 평가(제24조),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제2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 제공(제30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제3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p>
---------------------	--

<화학물질관리법>

1. 영업정지 및 과징금제도 (제36조)

- \*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매출액 비율을 설정한다.
-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플랜트가 있을 경우 벌칙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플랜트에 한정
- \* 과실 정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실 정도에 따라 처분 정도가 달라지도록 구분
- \* 재해방지는 본래 벌칙 강화보다는 훈련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대책 강화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개념을 입법과정에 접목시켜야 함

2. 장외영향 평가 (제23조)

- \* 장외평가 방법의 확립과 결과를 감안한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화
- \* 방법 확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시
- \* 일률적으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 사업장의 규모, 위험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서 기간의 유예 등을 규정
- \* 사업장의 규모, 취급물질의 위험성 정도 등에 따른 면제
- \* 혼합물, 조성물의 경우, 장외평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
- \* 기존 공장 주변에 새로 주택이 건설될 경우에는 장외평가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대책을 실시할 때 등에도 부담을 경감하거나 대책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수립

3. 상기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제3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2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 의무(제43조), 허가물질 제조·수입  
 • 사용허가 등(제2조, 제19조, 제16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5조)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화학물질과 황인목 사무관 044-201-677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류필무 사무관 044-201-6834

검

검토결과

부분수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등록 (제10조)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화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등록대상은 **모든 신규화학물질임**
- \* 등록기준(화평법 제10조제1항) : 신규화학물질 => 양적 제한 없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양적 기준 있음(연간 1톤 이상)
- 다만,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 최소화**(정식등록보다 축소), **등록통지기간 단축**(현행 면제수준)으로 간이등록화
- \* 제출자료(정식 9종 => 4종), 등록통지기간(정식 30일 => 3~7일)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구체화**
- \* 화학물질 정보 생산·관리기반 구축, 등록 이행반 구축, 관리인력 양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담지원 실시 예정**

2. 등록면제 (제11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 **현행 유해법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용은 등록면제 대상**
- \* 공정개발, 시약, 시범제조, 테스트용 등 대상을 **구체화**

저우려 고분자화합물질의 등록면제

- **수평균분자량과 분자의 함량을 기준으로 저우려 고분자는 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 규정**

저우려 고분자			
	(요건1) 수평균분자량		(요건2) 분자의 함량
①	10,000이상	+	1,000미만 분자함량이 5% 미만 + 500미만 분자함량이 2% 미만
②	1,000이상 10,000미만	+	1,000미만 분자함량이 25% 미만 + 500미만 분자함량이 10% 미만

3. 제조 등의 보고 (제8조)

영업비밀 보호 위한 **보고자료의 보호요청 가능**

- 보고서 제출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의 요청시 **자료보호기간 동안 비공개**(법 제45조)

- 보고의무자에는 **화학물질 판매자도 포함**(국회 입법취지)
  - **신규화학물질(모든)과 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화학물질의 **판매자는 대체자료 제출시 일부 자료 생략**
    - \* 상품명, 구매자, 확인된 함유성분 제출시 판매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화학물질의 정보, 판매량, 용도는 생략 가능

4. 상기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

-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
  - 유해성,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위주로 제공**
  - **성분·함량은 제외하고, 제조량·수입량·판매량은 생략 가능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영업비밀 보호**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시 **함량기준 설정**
  - EU REACH와 동일하게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 설정(중량비 0.1%)**

<화학물질관리법>

1. 영업정지 및 과징금제도 (제36조)

- 법에서 위임한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위법사항별 중대성, 횡수에 따라 행정 조치 기준 마련
  -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행정처분**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부과
    - \* (예시) 1차(경고) → 2차(경고) → 3차(영업정지 5일) → 4차위반(영업정지 15일)
- 위법 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일부 영업정지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종별 상세 지침”** 마련
- 안전·환경노력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 및 개선명령 이행시 **위반횟수 산입 배제**
  -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중과실의 범위는** 개선명령의 미이행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체화
-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 x 일 부과 기준액**)으로 산정

- **일 부과 기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은 해당 전체 사업장이 아닌 '**영업정지 대상**'으로 한정

\* 화학물질 사용양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및 매출 증빙 방법 결정

## 2. 장외영향 평가 (제23조)

- 장외영향평가는 **공장 신증설시** 시설이 **안전하게 설계·설치**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운영

-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부 소속 정부기관인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담당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기업은 장외영향평가에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

- **기존 취급시설**은 단계별 유예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는 '**15년말까지**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 **외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년말** 또는 '**17년말까지**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 **범용 프로그램** 개발·배포,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신뢰도\*** 제고

\* 업종·규모별 대표 취급시설을 선정, 사고 발생시 영향 예측, 이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수준 도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대상 기업 설명회 등 **교육 실시**

## 3. 상기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범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보관·저장업, 운반업 등)**와의 관계는 **영업거래로 판단하여**, 도급의 범위로 보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유발한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은 **도급인의 관리·감독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기업은 장외영향평가에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토록 하여 작성 간소화</li> <li>○ 기존 취급시설은 단계별로 유예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는 '15년말까지 제출하고, 이외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년말 또는 '17년말까지 제출</li> </ul> </li> <li>□ <b>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1년마다 고지토록 규정(구 유해법도 동일)</li> <li>○ 대표전달(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통·반장 활용), 공동 고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등 고지 방식 구체화</li> </ul> </li> <li>□ <b>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누출량 및 사고 상황별 기준 마련</li> <li>○ 즉시 신고의 판단시점을 사고발생(또는 인지) 15분(北美 기준)으로 검토하되, 불가항력, 긴급 대응·조치로 인한 시간 지연은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li> </ul> </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산업계 이행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3~ :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산업계 공동 참여, 기업별 준비현황 모니터링, 대응 지원</li> </ul> </li> <li>○ 민·관 협업체계(가칭 “화학물질 안전포럼”) 상설화</li> <li>○ '14.2~6 : 신규 제도 모의적용, 산업계 이행준비 지원</li> </ul> </li> <li>□ <b>제도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2 : 화평법/화관법 이행 IT 시스템 구축</li> <li>○ '14.3~ : 독성시험, 위해성평가, 안전진단 등 전문인력 양성</li> <li>○ '14.3~ : 국내 시험기관(GLP), 컨설팅업체 육성 지속 추진</li> </ul> </li> </ul>
	추진완료 예정일	'14년 12월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2.18~3.31 : 입법예고</li> <li>□ '14.4~6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li> <li>□ '14.9 : 하위법령 공포 (2015.1.1일부터 시행)</li> </ul>

<p>과제번호 5-2</p>	<p>(건의내용) 계약서 등 서면의 '지연발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외 마련</p>	
<p>관련부처 담당자</p>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송명현 사무관 044-200-4588</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13.5.22 시행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는 서면 지연 발급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p> <p>*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p> <p>○ 즉,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서면발급 시기, 해당 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p> <p>*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 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서면지연 발급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p> <p>* 서면 미발급 관련하여 실제로 서면 미발급행위가 있는 후 뒤늦게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p> <p>○ 건의내용과 같이 구두발주를 하고 납품·인도일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 교부시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p> <p>-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확정한 계약내용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과제번호 5-3		(건의내용) IT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면제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류종성 사무관 044-215-4454
검토의견	검토결과	기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한국은 ITA 기술협정('96.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선언)을 통해 합의된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203개 품목(HS 10단위 기준, 385개 품목)을 비과세 중에 있음 <input type="checkbox"/> WTO를 통해 관계국 검증 등을 거쳐 합의된 품목에 대한 비관세화 조치를 실시 중 <input type="checkbox"/> 동 건의에서 주장한 '관세부과 대상으로 남아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불분명하여 추가 검토 곤란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5-4</p>	<p>(건의내용) 'K마크', 'ECO마크(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재검토- 'K마크'</p>	
<p>관련부처 담당자</p>	<p>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고현대 주무관 044-203-4518</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 <input type="checkbox"/> K마크는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인증제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증기준) K마크는 ISO 17025, IEC Guide 65 등 국제표준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는 임의인증제도          - K마크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및 품질향상과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인증제도          * 일본의 경우 K마크와 유사한 S마크 운영. S마크는 일본 임의인증시장의 95%를 점유하며, S마크 인증미취득 시 일본내 판매 불가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K마크 인증절차 간소화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K마크는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 절차 간소화 요구는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을 부정하는 내용          - K마크 공장심사(공장사찰)는 IEC Guide 65에 따라 제품 품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의 하나          - K마크 공장심사비용은 외국의 공장심사비용의 1/5 수준으로 추가로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          * K마크 초기공장심사비용 약 35만원, 대부분 외국의 초기공장심사비용 약 150만원(다만 공장심사비용은 회사여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따라서 K마크 공장심사 폐지등의 인증절차 간소화 요구는 제품의 품질저하에 따른 국민안전확보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  <input type="checkbox"/> 다만, 기업의 신청절차 등의 편리성 개선을 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선          - 현재 운영중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의 K마크 신청시 편리성 제고       </p>
	<p>추진계획</p>	<p> <input type="checkbox"/> 고객전용홈페이지 개선 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온라인 서비스인 고객전용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기업의 신청절차를 개선토록 함.          -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접수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input type="checkbox"/>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  <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14년 10월~12월 고객전용홈페이지 개선 추진       </p>

<p>과제번호 5-4</p>	<p>(건의내용) 환경표지제도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단위의 제조사업장(공장) 심사에 대한 애로</li> <li>- 심사비용 전액 기업 부담에 대한 애로</li> </ul>	
<p>관련부처 담당자</p>	<p>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김경도 주무관 (044-201-6670)</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1년 단위의 제조사업장(공장) 심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경표지 인증</b>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증(서류, 시험, 현장) 절차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한해 <b>2년 단위로 인증을 부여</b>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2년이 경과된 첫 기간연장 및 이후 홀수차(3차, 5차 등)에서는 신청업체 제출서류를 토대로 기 인증제품과의 동일 여부 확인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므로 <b>사실상 4년마다 제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b>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짝수차(2차, 4차 등)에 한해 제조사업장 방문을 실시</li> </ul> </li> <li>- 참고로, <b>제조사업장 심사의 경우</b>, 기업 제출 서류의 실제 이행·관리 여부 및 시험분석 항목의 시료 샘플링 등 환경마크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b>중요 절차</b>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b>심사비용 전액 기업부담</b>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경마크 인증으로 인해 수혜를 얻는 기업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임의제도이나, 이를 통해 <b>공공조달 가점 및 환경제품 구매 관련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 유통사 입점시 수혜가 발생</b></li> <li>- 참고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b>규정된 수수료 이외의 회식비 등 별도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b>, 인증심사의 공정성·청렴성을 저해하는 <b>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음</b></li> </ul> </li> <li>* 환경부 고시(제2013-128호)에서는 신청수수료,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li> </ul> </li> </ul>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과제번호 5-5	(건의내용) 신약평가 시 평가기준(ICER 임계치)에 대한 탄력적 적용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 044-202-2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보험 약가제도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가치 반영 조치 시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에 고려하여 심평원 경제성 평가 값(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여 평가에 반영 중 (‘13.11월~)</li> <li>* ICER 값은 평가 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님</li> </ul> </li> <li>○ 대체치료제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시행(‘1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13.12.31 시행)</li> </ul> </li> </ul> </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

<p>과제번호 5-6</p>	<p>(건의내용) 대체치료제가 없는 약제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하여 환자 접근성 개선의 조기 이행이 필요하며, 임상자료가 불충분한 신약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자료 면제 등 평가기준 완화 필요</p>	
<p>관련부처 담당자</p>	<p>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 044-202-275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부분수용</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보험 약가제도 개선 완료</p> <p>○ 대체치료제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b>위험분담제 도입·시행</b>(‘13.12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13.12.31 시행)</p> <p><input type="checkbox"/>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정하는 원칙(일명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를 선정함</p> <p>○ 이 과정에서 신약은 경제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급여적정성 여부를 정하고 있어 <b>비용효과성 자료 면제는 수용곤란함</b></p> <p>○ 또한, 신약 평가 시 비용효과성, 임상적 개선정도 뿐만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하고 있음</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과제번호 5-7</p>	<p>(건의내용) 약가협상지침 관련 보험 등재된 비교대상 국가가 3개국 이하인 경우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 이하로 정한 규정의 삭제 요망</p>	
<p>관련부처 담당자</p>	<p>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 044-202-275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부분수용</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약가는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및 제약사와 건보공단간의 약가협상을 거쳐 결정됨</p> <p>○ 협상지침 규정은 협상 시 참고하는 가격을 정한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약가협상 지침 개정·시행('14.1월)</p> <p>○ 건보공단 약가 협상 시 심평원에서 인정한 임상적 개선 정도를 고려 명시하는 등 협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p> <p>- 3개국 이하 등재되어도 심평원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인정된 경우에는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 이하 금액을 90% 이하 금액으로 상향하였음</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조치완료)</p>



과제번호 5-8	(건의내용) 의약품 전자신청 사이트를 통한 신청처리기한의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왕소영 연구관 043-719-2873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p><b>&lt;개선요청 사항&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이 Ez-drug(의약품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 심사과별로 심사진행상황 및 검토예정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요청</li> <li>2. 보완자료 제출 후 심사결과가 적합으로 회신된 경우 처리기한 이전이라도 최종 허가 요청</li> <li>3. 신청처리기한에 관한 Q&amp;A 등을 공개하여 행정절차 의문점 해소</li> </ol> <p><b>&lt;현 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민원신청 시스템 화면에서는 협의기간(예 : 처리예정일수 60일)은 표시되나, 협의처리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심사완료일을 예측하기 어려움</li> <li>○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신속하게 허가하고 있음</li> <li>○ 신청처리기한과 관련된 별도로 작성된 Q&amp;A는 없으며, 민원질의시 빠른 시일 내 답변하고 있음</li> </ul> <p><b>&lt;검토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이 각 협의부서의 '협의처리일자(예 : 2014.3.17)'를 확인할 수 있도록 Ezdrug Drug 시스템 개선 추진</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의 민원신청 시스템(Ezdrug Drug) 화면에서 '처리예정일수'가 '협의처리일자'(예 : 2014.3.17)로 변경되도록 기능 개선 요청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4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